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74 발의연월일: 2025. 4. 3.

발 의 자:신정훈·박정현·이광희

김원이 • 박선원 • 김현정

김한규 · 차지호 · 박희승

안규백 · 김기표 · 정을호

부승찬 의원(13인)

제안이유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감찰을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 관으로서, 그 설립 취지에 맞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정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행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본연의 기능과 역할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지속되었음.

특히, 감사원이 행정부의 자율성과 정책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과도한 정치감사와 정책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감사원의 감사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감사를 제한하며, 행정부의 정책 결정에 대한 지나친 개입을 방지하여 감사원이 정쟁의 도구가 아닌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행정의 적법성을 감사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감사원 임직원은 직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안 제10조의2 및 제51조제3항 신설 등).
- 나.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되, 의결의 합의는 비공개로 하여 자유로운 의견 개진으로 심의 · 의결의 공정성 · 객관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항이더라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 다. 감사원의 핵심적 기능은 행정부 활동을 감시하는 일이므로 대통령으로부터 인사가 독립될 수 있도록 감사원 공무원 임면권자를 대통령에서 감사원장으로 변경함(안 제18조).
- 라.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대상자에게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사유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되, 사전통보를 하여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의2 신설).

- 마. 감사원의 감찰 금지사항에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當否)'를 추가하고, 제24조제4항제3호 단서에 따른 감사라 하더라도 위법 또는 고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업무담 당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자제하도록 함(안 제24조제4항제3호 및 제32조제12항 신설 등).
- 바. 감사원이 특별감찰을 하려고 할 때에는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 고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 사. 출석·답변의 요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답 변 요구의 취지와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 (안 제27조제2항 신설).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2절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감사의 중립성) 원장·감사위원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1조의2(의결의 공개 등) ① 감사위원회의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감사위원회의 의결의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제1항 본문 중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를 "원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무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며, 6 급 이하의"를 "이하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장제1절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감사의 사전통지) 감사원은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이하 "감

사"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감사를 받을 자에게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사유를 사전에 통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감사목적을 달성할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 다만, 정책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판단, 자료·정보 등의 오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수단의 적정 여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적법성·절차준수 여부등은 감찰대상으로 본다.
- ⑤ 원장·감사위원과 그 밖의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장제3절에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4조의2(특별감찰) ① 감사원은 공무원의 금품수수, 무사안일한 근무대도 등에 대한 현장 적발 위주의 감찰활동이나 정부교체기에 발생하는 공무원들의 기강해이 등을 대상으로 감찰활동(이하"특별감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감찰을 개시할 때에는 감사원은 감찰의 목적, 감찰할 사안의 범위와 감찰방법, 감찰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

- 을 얻어야 한다.
- ③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2항의 감찰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감찰계획서의 범위, 제출, 상임위원회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24조의3(감찰 결과의 보고) ① 감사원은 특별감찰을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감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찰 결과를 포함한 감찰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 보고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 제2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답변의 요구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답변 요구의 취지와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제32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24조제4항제3호 단서에 따른 감사라 하더라도 위법 또는 고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자제하여야 한다.

제5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제10조의2를 명백하게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0조의2(감사의 중립성) 원장· 감사위원과 그 밖의 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정치
<u><신 설></u>	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제11조의2(의결의 공개 등) ① 감 사위원회의 의결은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 른 비공개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하도록 의결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위원회의 의결의 합의 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18조(직원의 임용) ① 사무총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 하여야 한다. 제18조(직원의 임용) ①
장,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4급 이상의 공무원 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	

쳐 <u>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u> 임용한다. 다만, 전보·파견· 휴직·복직 등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 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 니한다.

- ② 5급 <u>공무원은 원장의 제청</u> <u>으로 대통령이 임용하며, 6급</u> <u>이하의</u> 공무원은 원장이 행한 다.
- ③ 대통령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원장에 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3항 및 공무원 임용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④ (생 략) <신 설>

<u>원장이</u>
,
(2) <u>o</u>
<u><삭 제></u>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감사의 사전통지) 감사 원은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이 하 "감사"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감사를 받을 자에게 감사원규 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사유를 사전에 통지(「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 제24조(감찰 사항) ① ~ 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수 없다.

1. • 2. (생략)

<신 설>

<신 설>

<u><신 설></u>

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보를 하는 경우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감찰 사항) ① ~ ③ (현 행과 같음)

4	 	 	 	

- 1. 2. (현행과 같음)
- 3.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 다만, 정책결정의 기초가 된 사실판단, 자료・정보 등의 오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여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적법성・절차준수 여부 등은 감찰대상으로 본다.
- ⑤ 원장·감사위원과 그 밖의 직원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2(특별감찰) ① 감사원은 공무원의 금품수수, 무사안일한

근무태도 등에 대한 현장 적발 위주의 감찰활동이나 정부교체 기에 발생하는 공무원들의 기 강해이 등을 대상으로 감찰활 동(이하 "특별감찰"이라 한다) 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감찰을 개시할 때에는 감사원은 감찰 의 목적, 감찰할 사안의 범위와 감찰방법, 감찰에 필요한 기간 및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감찰 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 2항의 감찰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감찰계획서의 범위, 제출, 상임위원회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규칙 으로 정한다.

<신 설>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 제27조(출석답변·자료제출·봉 인 등) ① (생 략) <신 설>

② ~ ⑤ (생 략)

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찰 결과를 포함한 감찰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위원장은 이를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 고서 작성, 보고 및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 인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 답변의 요구를 하는 경우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출석・답변 요구의 취지와 이유를 서면 또 는 구두로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 ⑥ (현행 제2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 제32조(징계 요구 등) ① ~ ⑪ 제32조(징계 요구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 ① 제24조제4항제3호 단서에

제51조(벌칙)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u>제2항</u>의 징역과 벌금은 병 과(倂科)할 수 있다. 따른 감사라 하더라도 위법 또는 고의, 중대한 과실이 아닌경우에는 해당 업무담당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요구 또는 문책 요구를 자제하여 한다.

제51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0조의2를 명백하게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④ 제2항 및 제3항------